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안학교에 대안교육이용권 제도 도입 〉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91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검토의견	3
-----------------	---

1. 대안학교에 대안교육이용권 제도 도입	3
------------------------------	---

※ 참고자료

- 무상교육 제외 대안학교 대상 고교 학비 교육비 지원 현황	10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1. 14.
3. 회 부 일 : 2025. 1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수업료 등의 비용은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대안학교는 수업료 등의 비용을 받고 있으므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이 대안교육을 선택한 경우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대안학교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안학교의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수업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대안학교에 대안교육이용권 도입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23호)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도입하려는 대안교육이용권 제도를 대안학교에도 동일하게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5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078호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 ④ (생략) <u><신설></u>	법률 제210789호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학생은 대안학교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이하 “대안교육이용권”이라 한다)을 제시하고 입학금·수업료 및 운영지원비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이용권의 발급·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준용하되,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로 본다.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임¹⁾. 이러한 교육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등에서 일정 수준의 자율성이 부여됨. 2025년 4월 기준, 전국의 대안학교는 공립 24교, 사립 28교 등 총 52교이며 재학생 수는 5,531명임.

< 인가 대안학교 현황 >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4	2	1	3	1	2	1	1	1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	6	3	-	3	6	6	-	52

자료: 교육부, '25.4. 기준

명칭이 유사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감에게 ‘등록’만 하면 되며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대안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해당함. 따라서 대안학교는 대안교육기관보다 제도권 교육에 한층 근접한 형태의 교육기관으로 평가됨.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비교 >

구분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기관
개요	목적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실시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현황	52개교 ('25. 4.)	267개 등록 ('25. 9.)
운영	학력인정	학력 인정	학력 미인정
	모집단위	지역/전국단위	자율
	학생선발	학칙으로 규정	자율
	교육과정	학칙으로 편성 (국어, 사회 교과는 교육과정 상 수업시수 50% 이상)	자율
재정	재정지원	재정결함보조, 목적사업비 등 시도별 상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시도별 상이
	수업료	시도조례 또는 자율로 정함	자율로 정함
인가, 지정 등		교육감 인가	교육감 등록

자료: 교육부

□ 한편, 평생교육이용권은 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35만원씩²⁾ 평생교육강좌 수강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임.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43,666명, 차상위계층 7,261명 등 50,927명이 바우처를 발급받았고, 국고예산은 285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³⁾.

2) 우수이용자의 경우 최대 70만원

3) 동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형태로 이루어지고, 지원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국비 70%, 지방비 30%의 매칭사업 형태로 진행됨.

< 소득수준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현황 >

(단위: 명, %)

구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발급(지원) 인원	신청 대비 지원율
2019년	3,837	1,646	918	6,401	78.8%
2020년	5,867	2,327	2,180	10,374	76.4%
2021년	9,978	3,446	6,107	19,531	68.4%
2022년	14,581	4,364	15,420	34,365	47.6%
2023년	28,475	5,577	16,957	51,009	52.7%
2024년	43,666	7,261	-	50,927	90.0%

자료: 교육부

- 기존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3523호,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이 대안교육기관에 평생교육이용권과 유사한 대안교육이용권을 도입하려는 내용인바, 개정안은 이러한 대안교육이용권 제도를 대안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되고, 바우처 방식을 통해 학생 스스로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탐색·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저소득층 등 교육 소외계층에게 이용권을 우선 발급함으로써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대안학교 이용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심사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평생교육과 대안교육은 그 본질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음.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에 걸친 학

습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대안교육은 기존 학교 교육의 구조와 과정을 재구성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짐. 따라서 대안교육이용권을 도입할 경우 학교 교육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저소득층 대안학교 이용자에 대한 기존 지원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공립 대안학교 24교 전체와 사립 대안학교 28교 중 13교가 무상교육을 실시 중이며, 나머지 사립 15교만이 수업료를 납입하고 있음.

수업료 등이 있는 사립 대안학교의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수업료·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서울, 대전,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정책을 통해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수업료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⁴⁾.

< 교육급여 제도 개요 >

구분		'24년	'25년		'26년	
			지원금액	전년대비	지원금액	전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초	461,000	487,000	+26,000 (+5.6%)	502,000	+15,000 (+3.0%)
	중	654,000	679,000	+25,000 (+3.8%)	699,000	+20,000 (+3.0%)
	고	727,000	768,000	+41,000 (+5.6%)	860,000	+92,000 (+12.0%)
교과서비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자료: 교육부

< 교육비 지원 제도 개요 >

교육비	지원 기준	지원 내용
고교 학비 (무상교육 제외)	① 기초·한부모·차상위 등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②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경우 ④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학비 전액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무상급식 제외)		▪ 보호자 부담금(중식) 전액 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 연간 60만원 내외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인터넷통신비

자료: 교육부

□ 셋째, 대안학교의 관리체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대안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 자율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수업료를 납입하는 학교의 경우 연간 평균 수업료는 694만원, 최고 수업료는 1,448만원 수준임. 또한 학교 운영지원비는 평균 173만원, 최대 1,470만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규모의 학비가 부담되고 있음.

< 대안학교 학생부담금 현황 >

구분	학교 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기숙사비	합계
공립(무상)	24교	0	0	0	0	0
사립(무상)	13교	0	0	0	0	0
사립 (수업료, 입학금 있음)	15교	평균 175만원	평균 694만원	평균 173만원	평균 246만원	평균 1,288만원
		최대 300만원	최대 1,448만원	최대 1,470만원	최대 858만원	최대 2,610만원
합계	52교					

자료: 교육부

4) 상세 지원 현황은 '참고자료1: 무상교육 제외 대안학교 대상 고교 학비 교육비 지원 현황' 참조.

대안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수업료와 운영지원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교육이용권이 도입될 경우, 이를 근거로 수업료가 인상되는 등 이용권의 실질적인 혜택이 학생이 아닌 학교 측에 귀착될 가능성이 존재함.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에게 대안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을 통한 대안교육 이용권 도입은 대안교육기관의 책무성 및 투명성 확보, 최소한의 교육의 질 보장 체계 마련과 병행하여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대다수의 대안학교(공립 24교, 사립 13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이용권 사용 대상에서는 제외되므로 법률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며, 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 대안학교(15교)에 이용권 지원 시 일반 사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 대안학교의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교육급여 또는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84

참 고

무상교육 제외 대안학교 대상 고교 학비 교육비 지원 현황⁵⁾

교육청	대상 학교수	지원 학교수	지원항목				지원기준	비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서울	1	1	○	○	○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산	0	0						
대구	0	0						
인천	0	0						
광주	0	0						
대전	2	2	○	○	○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울산	0	0						
세종	0	0						
경기	6	5	○	○	○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교는 법인 자체 지원 중
강원	0	0						
충북	2	미지원						
충남	0	0						
전북	0	0						
전남	0	0						
경북	4	미지원						
경남	0	0						
제주	0	0						

5) 자료: 교육부